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2021. 5. 20

라살자산운용㈜ (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됨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 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동법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당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 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에 정보. 단, 회사의 부문별 책임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를 포함)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고유재산 운용업무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및 회사가 속한 라살자산운용그룹의 내부 정책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된 증권을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함. 회사가 고려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며, 관련법 또는 내부정책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 미공개중요정보 분류 시 고려사항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
-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2)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판단 기준
- 정보의 미공개 여부
- 해당 정보가 구체적이고 중요한지 여부
- 합리적인 투자자 기준으로 해당 정보가 투자결정에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 정보가 특정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지 여부

준법감시인은 거래주의 목록 (Watch List) 및 거래제한 목록 (Restricted List)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 및 임직원에 의한 매매가 제한되도록 회사 및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1)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단, 아래 사항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알려진 이해상충의 유형의 예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그 외에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이해상충 유형	주요 충돌관계	업무 프로세스	이해상충 방지수단
개인투자행위	임직원 - 고객	임직원의 개인투자행위	상시모니터링 (이해상충 여부에 따른 사전승인 포함)
선물 및 접대/향응의 수수	임직원 - 고객	업무 관련 선물 및 접대/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준법감시인에 보고 또는 사전승인
대외활동	회사 - 임직원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	사전승인
비밀정보	회사 - 임직원	회사정보자산의 대외 제공	정보차단벽의 수립
오류수정	회사 - 고객	기준가격 산정 및 매매 등의 업무관련 오류의 수정	보고 및 수정방법 승인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고객 - 고객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고객 - 고객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일정기간이 경과한 정보의 제공
계열회사와의 거래	회사 - 고객	집합투자재산에 의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운용업무 상시 모니터링
운용지시 (사전자산배분)	고객 - 고객	여러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통합 주문	운용역과 매매역 분리, 사전자산배분 확인
의결권 행사	회사 - 고객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준수

2)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거나 이해상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의 관리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지 관련 업무는 중지되며, 이해상충 관리절차는 아래의 원칙에 따름

-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중지
-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고객 간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됨

2) 이해상충의 방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

-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 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 회사와 관계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 임직원과 투자자와의 관계
-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

3) 편익수령 및 대외활동 제한: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선물과 접대/향응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임직원은 준법감시부와 관련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

4) 비밀정보의 관리: 비밀정보는 정보차단벽 및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

5) 회사는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라살그룹의 이해상충관련정책 (Conflict of Interest Manual 및 Conflict Wall Guidelines)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해상충관리: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고객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객자산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가능한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식별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함
- 정보교류차단: 회사는 정보차단벽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이해상충을 방지하며 정보교류가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부서 및 관련 승인권자의 승인에 따라 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